

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

〈조례명 개정 2000 · 3 · 7〉

〈조례명 개정 2006 · 5 · 19〉

소관부서 : 의회사무과

제정 1996 · 3 · 1 조례 제 6호
개정 1996 · 11 · 28 조례 제 174호
개정 1997 · 5 · 23 조례 제 190호
개정 2000 · 3 · 7 조례 제 323호
개정 2001 · 5 · 16 조례 제 369호
개정 2002 · 1 · 10 조례 제 399호
개정 2004 · 3 · 22 조례 제 490호
개정 2005 · 10 · 20 조례 제 587호
개정 2006 · 5 · 19 조례 제 619호
개정 2007 · 8 · 3 조례 제 677호
개정 2007 · 10 · 16 조례 제 681호
개정 2007 · 12 · 31 조례 제 692호
개정 2009 · 1 · 16 조례 제 744호
일부개정 2014 · 12 · 31 조례 제 1100호
일부개정 2017 · 12 · 28 조례 제 1371호
일부개정 2019 · 3 · 8 조례 제 1473호
일부개정 2022 · 9 · 30 조례 제 1857호
(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
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
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 2022 · 12 · 28 조례 제 1890호
일부개정 2023 · 5 · 12 조례 제 1930호
일부개정 2024 · 3 · 12 조례 제 2056호
일부개정 2024 · 4 · 4 조례 제 207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
이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
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〈개정 2000 · 3 · 7, 2007 · 10 · 16, 2007 · 12 · 31, 2022 · 9 · 30〉

제2조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) ① 의원의 의정활동비로 매월 1,200,000원의 의정자료
수집·연구비와 300,000원의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. 〈개정 2024 · 4 · 4〉
② 2023년도 이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2,575,160원으로 하고, 임

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

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(2026년)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. 다만,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〈개정 2007 · 12 · 31, 2009 · 1 · 16, 2014 · 12 · 31, 2019 · 3 · 8, 2022 · 12 · 28〉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이천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,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〈개정 2000 · 3 · 7, 2004 · 3 · 22, 2006 · 5 · 19, 2007 · 12 · 31〉

제3조 삭제 〈2006 · 5 · 19〉

제4조(여비)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 〈개정 1997 · 5 · 23〉

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 및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기준을 적용한다. 〈개정 2006 · 5 · 19, 2007 · 12 · 31, 2019 · 3 · 8, 2022 · 9 · 30〉

제4조의2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24 · 3 · 12〉

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해당기간에 여비는 전액,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. 〈신설 2024 · 3 · 12〉

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1항에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제2항의 처분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 〈신설 2024 · 3 · 12〉

[본조신설 2017 · 12 · 28]

제4조의3(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) 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, 가산징수 등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3 · 5 · 12]

제5조 삭제 〈2006 · 5 · 19〉

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

부칙

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 · 11 · 28 조례 제17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7 · 5 · 23 조례 제19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0 · 3 · 7 조례 제32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01 · 5 · 16 조례 제36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2 · 1 · 10 조례 제39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 · 3 · 22 조례 제49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05 · 10 · 20 조례 제58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 · 5 · 19 조례 제61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 · 8 · 3 조례 제67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 · 10 · 16 조례 제68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 · 12 · 31 조례 제69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

부칙 <2009 · 1 · 16 조례 제74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4 · 12 · 31 조례 제110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 · 12 · 28 조례 제137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 · 3 · 8 조례 제147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2 · 9 · 30 조례 제1857호,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
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 · 12 · 28 조례 제1890호>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 · 5 · 12 조례 제193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 · 3 · 12 조례 제205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 · 4 · 4 조례 제207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기간에 관한 특례)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지급한다.

[별표 1] 및 [별표 2] 삭제 <2019·3·8>

[별표] <신설 2019·3·8>

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

(제4조제2항 관련)

1. 국내 여비

구분	준용
시 · 군 · 자치구의회 의원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 제1호

비고

- 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 당일 출 · 퇴근이 곤란한 원격지(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)나 도서지역(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)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 · 숙박비 및 식비(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)를 지급할 수 있다.
-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 · 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.

2. 국외 항공운임

구분	준용
시 · 군 · 자치구의회 의장 · 부의장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
의장 · 부의장을 제외한 시 · 군 · 자치구의회 의원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

3. 국외 여비

구분	준용
시 · 군 · 자치구의회 의장 · 부의장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4 제4호
의장 · 부의장을 제외한 시 · 군 · 자치구의회 의원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4 제5호

비고: 준비금의 지급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23조를 준용한다.